

대구예술대학교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

(제정 2004.05.11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0.08.02. 교무위원회)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 학칙 제82조에 의하여 대학행정의 전반 또는 부분적인 중요사항을 예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절차)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(실)의 장이 사전에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조 (구성) 각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교직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

제4조 (위원의 임기)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 또는 위촉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.(개정 2010.8.2)

제5조 (규정) 각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, 그 규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.

제6조 (소집과 의결)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 (회의록)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8조 (시행) 각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얻은 후 시행한다.

제9조 (사무) ① 각 위원회는 간사 또는 서기를 두어 사무를 처리케 한다.

② 간사 또는 서기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0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.